

# 정 관

제정 2004. 4. 1.  
개정 2005. 3.17.  
개정 2006. 3.21.  
개정 2007. 3.23.  
개정 2008. 3.21.  
개정 2009. 3.27.  
개정 2011. 3.25.  
개정 2012. 3.27.  
개정 2013. 3.28.  
개정 2013.10.29.  
개정 2014. 3.31.  
개정 2015. 2.16.  
개정 2016. 3.25.  
개정 2018. 7.27.  
개정 2019. 3.27.

## 제 1 장 총 칙

**제1조 【상 호】** 이 회사는 STX엔진주식회사라 칭한다. 영문으로는 STX Engine Co.,Ltd. (약호 STX Engine) 로 표기한다.

**제2조 【목 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내연기관 및 터빈의 제조, 수리 및 매매업
2. 발전기 제조업, 임대 및 리스업
3. 태양광 에너지, 풍력에너지 및 가스사용시설, 기기의 설계, 제작, 판매 및 시공업
4. 플랜트 설계, 제작, 시공, 감리 및 설계용역업
5. 대기오염방지시설 설계 및 시공업
6. 수질오염방지시설 설계 및 시공업
7. 소음진동방지시설 설계 및 시공업
8. 일반 및 특정 폐기물 처리시설 설계 및 시공업
9. 산업설비 공사 및 용역업(설계, 시공, 감리, 컨설팅, 시운전)
10. 하역운반기계 설계, 제조, 판매, 설치 및 수리업
11. 각종 산업기계 및 산업용 구조물의 설계, 제작, 설치, 수리 및 매매업
12. 자동차 엔진 및 자동차 부품 제조업 및 관련 서비스업
13. 중기제조, 수리 및 매매업
14. 전기공사업, 전기통신설비 공사업
15. 소방설비 설계 및 시공업
16. 스포츠 시설과 대중오락시설의 건설 및 운영업

17. 의장품 제조업
18. 수출입업 및 동 대행업
19. 부동산 임대업 및 창고업
20. 정보시스템 H/W 및 S/W 개발, 운영 및 매매업
21. 토목, 건축, 전기, 수도, 냉난방, 위생공사업등의 설계, 시공 및 감리업
22. 도소매업
23. 통신장비 제조, 판매업
24. 벤처사업 개발, 투자 및 인터넷 비즈니스 사업
25. 각종 전기, 전자기기 및 동부품의 제조판매업
26. 시스템 통합사업
27. 부가통신사업
28. 군납품업
29. 외국상사 대리점업
30. 정보처리 및 정보의 수집, 가공 및 판매사업
31. 자료처리 및 데이터베이스업
32. 인터넷관련 사업
33. 망설비 수출입업
34. 각종 총포와 그 부속품의 제조 및 판매
35. 유통판매업
36.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업
37. 카드업
38. 부동산에 대한 투자, 임대, 관리 및 매매업
39. 기타 용역 서비스업
40. 정보통신공사업
41. 감속기 제조업 및 관련 서비스업, 부품판매
42. 추진기 제조업 및 관련 서비스업, 부품판매
43. 기상관련장비, 레이더 제조업 및 관련 서비스업, 부품판매
44. 선박 및 보트 건조업
45. 위 각호에 관련되는 유지보수업, 설치공사업, 요소부품의 제조, 수리, 판매, 용역제공 및 부대되는 일체의 사업

**제3조 【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 등의 설치】** ① 회사는 본점을 경상남도 창원시에 둔다.

②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지점, 사업소, 영업소, 출장소 또는 사업장을 둘 수 있다.

**제4조 【광고방법】** 회사의 광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stxengine.co.kr>)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에 서 발행되는 일간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한다.

## 제 2 장 주 식

**제5조 【발행할 주식의 총수와 종류】** ①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200,000,000주로 한다.

②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

③ 회사가 발행하는 각 보통주식 및 종류주식 일주의 금액은 2,500원으로 한다.

**제6조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19,541,336주로 한다.

**제7조 【종류주식의 발행】** ① 회사의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하여 우선권을 가지는 우선주식, 의결권이 없는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또는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종류주식을 발행할 경우 제7조의2 내지 제7조의5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종류주식을 발행할 경우 각 해당 규정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의2 【우선주식의 발행 및 내용】** ①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익배당에 관하여 우선권을 가지는 종류주식(이하 "우선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년 6% 이상으로 하여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 우선 비율에 따른 금액을 현금으로 우선 배당한다.

③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④ 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년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⑤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 및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에 배정하는 주식과 동일한 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⑥ 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으로 하고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의3 【의결권 없는 주식의 발행 및 내용】** ①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이하 "의결권 없는 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의결권 없는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가지지 못한다.

③ 위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결권 없는 주식이 우선주식인 경우, 해당 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우선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주주총회의 다음 주주총회부터 그 우선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주주총회의 종료시까지의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제7조의4 【상환주식의 발행 및 내용】** ①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종류주식(이하 "상환주식"이라 함)을 발행할 수 있다.

② 회사가 상환할 수 있는 상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그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상환가액: 해당 상환주식의 발행가액에 일정한 가산금액을 합한 금액으로하되, 가산금액은 배당률, 시장상황, 기타 상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하려는 경우 이사회에서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뜻, 조정사유, 조정의 기준일 및 조정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2. 현물상환: 상환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현금 외에 유가증권(다른 종류의 종류주식은 제외)이나 그 밖의 자산으로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현물상환 대상 자산의 종류, 가액결정방법, 교부방법 등 현물상환의 조건, 단, 현물상환 대상 자산의 가액은 어떠한 경우에도 상환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3. 상환기간: 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일 익일부터 발행일 후 2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 후 1개월이 되는 날 이내의 범위에서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다. 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우선적 배당이 완료될 때까지 또는 상환에 충분한 이익이 생겨 상환할 때까지 상환기간은 연장된다.

(i) 배당에 관하여 우선적인 권리가 있는 상환주식에 대하여 우선적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ii) 회사의 이익이 부족하여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한 경우

4. 상환통지: 회사가 상환주식을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상환주식의 취득일 2주 전에 그 사실을 해당 상환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상 권리자에게 따로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하고, 위 기간의 만료시에 해당 상환주식은 강제상환 된다.

5. 상환방법: 회사는 상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이를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단,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안분비례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③ 위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위 제2항 제1호, 제2호에 정한 사항

2. 상환청구기간: 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일 익일부터 발행일 후 2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 후 1개월이 되는 날 이내의 범위에서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다. 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우선적 배당이 완료될 때까지 또는 상환에 충분한 이익이 생겨 상환할 때까지 상환기일은 연장된다.

(i) 배당에 관하여 우선적인 권리가 있는 상환주식에 대하여 우선적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ii) 회사의 이익이 부족하여 상환하지 못 하는 경우

3. 상환청구 통지: 상환청구 주주는 2주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상환할 뜻과 상환대상주식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4. 상환청구 방법: 주주는 상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이를 분할하여 상환해 줄 것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단, 회사는 상환청구 당시에 배당가능이익이 부족한 경우에는 분할상환할 수 있으며,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안분비례 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제7조의5 【전환주식의 발행 및 내용】** ①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통주식 또는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종류주식(이하 "전환주식"이라 함)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주주가 전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전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그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전환조건: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보통주식 또는 다른 종류주식의 발행가액은 해당 전환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한다.
2. 전환청구기간: 발행일로부터 1개월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발행 시에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전환청구기간 내에 전환권이 행사되지 아니하면, 전환청구기간 만료일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3.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 해당 전환주식과 동수로 하고,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은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다.

③ 위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주의 청구가 없더라도 회사가 전환할 수 있는 전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위 제2항 제1호 및 제3호에 정한 사항
2. 전환의 사유: 회사의 경영상 필요한 경우, 긴급한 자금 조달이 필요한 경우, 중요한 기술도입이 필요한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중대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발행 시에 이사회 결의로써 정한 사유로 한다.
3. 전환기간: 발행일로부터 1개월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발행 시에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전환기간 내에 전환권이 행사되지 아니하면, 전환기간 만료일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4. 전환통지: 전환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이사회는 해당 전환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상 권리자에게 전환 대상인 전환주식의 내용 등을 통지 또는 공고로 알려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합병, 주식의 병합 및 분할, 주식교환, 주식배당 또는 추가적인 주식의 발행 등 전환주식 보유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전환조건 및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그 발행 시 이사회가 통상적이고 합리적인 주주권의 희석방지관례를 감안하여 정하는 희석방지 조항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다.

⑤ 전환주식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제9조 【신주인수권】** ①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② 회사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3. 상법 제340조의2 및 제54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6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회사가 긴급한 자금의 조달, 재무구조의 개선, 회사의 영업에 필요한 재산의 확보 등 회사의 장기경영목표 달성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기관투자자, 개인투자자 및 법인 등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회사가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신주를 모집하거나 모집을 위하여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9. 회사가 재무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채권자에게 출자전환 등의 방법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의 제1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및 제9호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 416조 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가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공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영업년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11조 【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임·직원(상법시행령 제30조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의 범위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의 범위내에서는 이사회

의 결의로 임·직원(이 회사의 이사를 제외한다)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목표 또는 시장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 그 부여일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자로 한다.

④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 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제5조 제2항의 주식 중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⑤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대상이 되는 임·직원의 수는 재직하는 임·직원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고,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⑥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격 중 높은 금액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나. 당해 주식의 권면액

2.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⑦ 주식매수선택권은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행사할 수 있다.

⑧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내에 사망하거나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⑨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2조 【명의개서대리인】** ①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 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의 명의개서대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 제13조 (삭제)

**제14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와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의 주주명부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②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③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5조 【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제16조 【전환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3,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전환사채를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2.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4. 긴급한 자금의 조달, 재무구조의 개선, 회사의 영업에 필요한 재산의 확보 등 회사의 장기경영목표 달성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기관투자자, 개인투자자 및 법인 등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6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에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후 1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2.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4. 긴급한 자금의 조달, 재무구조의 개선, 회사의 영업에 필요한 재산의 확보 등 회사의 장기경영목표 달성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기관투자자, 개인투자자 및 법인 등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6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②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 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 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 후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내에서 이사회가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⑤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의2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제18조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2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 제 3 장 주 주 총 회

**제19조 【소집시기】** ①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사업년도 종료후 3개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20조 【소집권자】**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이사회가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②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제32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 【소집통지 및 공고】** 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전에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주간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한국경제신문과

매일경제신문에 2회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③ 회사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회사의 경영참고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회사의 경영참고사항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회사의 본·지점, 명의개서대행회사,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비치하는 경우에는 통지 또는 공고에 갈음할 수 있다.

**제22조 【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 또는 이의 인접지 이외에 서울특별시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23조 【의장】**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다만, 대표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② 의장의 유고시에는 제32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 【의장의 질서유지권】**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 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의 시간 및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25조 【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소유주식 1주에 대하여 1개로 한다.

**제26조 【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27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 【의사록 작성】**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와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 제 4 장 이사 · 이사회 · 감사

**제29조 【이사의 선임】** ① 회사의 이사는 3명이상 8명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②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하며, 이사 선임시에는 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로 구분하여 선임한다.

③ 이사는 집중투표의 방식으로 선임하지 아니한다.

**제30조 【이사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이내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② 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제29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사외이사가 사임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29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 이사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31조 【대표이사의 선임】**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제32조 【이사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각자 회사를 대표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집행한다.

②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사내이사 중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 【임원 및 고문 등】**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부상무 등의 임원을 둘 수 있다.

② 임원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분장 수행한다.

③ 임원의 수, 임기, 직책, 보수 및 선임 등에 대하여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회사는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회사의 고문 또는 상담역 약간명을 둘 수 있다.

**제34조 【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되며,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회에서 정한 이사회운영규정에 따라 회사의 주요사업 집행에 관한 사항을 결의한다.

**제34조의1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감경】** ① 회사는 이사의 상법 제399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②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이사가 상법 제 397조(경업금지), 제 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상법 제 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5조 【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의장의 유고시에는 제32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함에 있어서는 이사에게 회일 2일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36조 【이사회의 결의 및 의사록 작성】**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전원이 과반수로서 한다. 다만, 상법 제 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제 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2이상의 수로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⑤ 주주는 영업시간내에 이사회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⑥ 회사는 제5항의 청구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이를 거절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사회의사록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제36조의2 【위원회】**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회 내에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성과보상위원회
2.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3.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②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위원회에 대해서는 제34조, 제34조의1, 제35조 및 제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6조의3 【감사의 선임 및 임기】** ① 회사의 감사는 1명 이상 2명 이내로 한다. 그 중 1명 이상은 상근으로 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과는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③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제1항의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 한다. 다만, 소유주식수의 산정에 있어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있는 주식의 수는 합산한다.

④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로 한다.

⑤ 감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제36조의3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 【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⑤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⑥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⑦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제38조 【감사록】** 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39조 【이사 및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이사 및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은 주주총회가 정한 지급한도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결정한다. 단,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지급한도 결정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지급한도 결정을 위한 의안과는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② 이사와 감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 제 5 장 계 산

**제40조 【사업년도】**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1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비치 등】** ①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② 회사가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1항의 각 서류에 연결 재무제표를 포함한다.

③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이를 승인할 수 있다.

1. 제1항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을 때

2.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

⑤ 제4항에 따라 이사회가 승인한 경우에는 대표이사는 제1항의 각 서류의 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대표이사는 제1항 서류를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전부터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⑦ 대표이사는 제1항의 각호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 또는 제 4항에 의한 이사회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2조 【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 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그 사실을 선임한 사업연도 중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제43조 【이익금의 처분】** 회사는 매사업연도 이익금(이월이익잉여금 포함)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6. 차기이월이익잉여금

**제44조 【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배당은 매사업연도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제45조 【배당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제 6 장 보 칙

**제46조 【준용 규정】**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주주총회 결의, 상법 또는 기타 법규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7조 【내규 제정】**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업무수행 및 경영상 필요한 내규를 정할 수 있다.

## 부 칙

#### **부 칙 (2004.4.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할에 관한 사항】** 이 회사는 회사분할에 의해 설립되며 동 분할과 관련해 분할 전 회사인 주식회사 STX의 목적인 재산, 그 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는 2004년 2월 25일자 주식회사 STX의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주식회사STX의 분할계획서에 기재된 바에 따른다.

**제3조【최초사업년도에 관한 특례】** 회사의 최초사업년도는 제 4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설립일로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분할 전 회사의 명칭과 주소】** 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정관을 작성하고 분할 전 주식회사 STX의 대표이사가 기명 날인한다.

분할 전 주식회사STX의 명칭, 주소 및 대표이사의 성명은 다음과 같다.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동 80번지

주식회사 S T X

대표이사 김 대 두

#### **부 칙 (2005.3.17)**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5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06.3.2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6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① 제11조 제2항은 정관의 시행 후 최초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30조 제1항은 이 정관 개정 일에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는 이사부터 이를 적용한다.

#### **부 칙 (2007.3.23)**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7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정관 개정일에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사외이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2009.3.27)**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9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3.25)**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1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3.27)**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제 8기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12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9조, 제12조, 제15조, 제34조의1, 제36조, 제37조, 제41조, 제44조의 개정내용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3.28)**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제9기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13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10.29)**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제10기 제1차 임시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13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3.31)**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제10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14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2.16)**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제12기 제1차 임시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15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3.25)**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제12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16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7.27)**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제15기 제1차 임시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18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3.27)**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제15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19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4, 제7조의5, 제8조, 제12조, 제13조, 제17조의2 및 제18조 개정내용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제정되어 시행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